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44호 2019. 8. 29.(목)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106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남해군 공고 제2019-1115호	남해군민 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7
남해군 공고 제2019-1116호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
남해군 공고 제2019-1121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남해군 공고 제2019-1125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8
남해군 공고 제2019-1126호	제2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공고 34
남해군 공고 제2019-1127호	재해예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35
남해군 공고 제2019-1132호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45
남해군 공고 제2019-1152호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7
남해군 공고 제2019-1153호	양식어업면허 및 소멸 공고문 63
남해군 공고 제2019-1159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5
남해군 공고 제2019-1160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2호]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78
남해군 공고 제2019-1163호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2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106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통(60ℓ)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③항 신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급여 금지

나. 별표 1, 별표 2 개정 (60ℓ 수거통 신설)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9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2층 환경시설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9, 팩스 055-860-3707

이메일 kimyk7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055-860-3279) 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제9조 관련)

[단위:원]

규 격	용 도	공 급가 격	판 매수수료	판 매가 격
5ℓ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10	10	120
60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410	90	1,500
120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820	180	3,000
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846	54	900
6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538	162	2,700
1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076	324	5,400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제10조 관련)

[단위:원]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5ℓ (단독주택용)	분홍색	가로14.5cm × 세로3cm	유포지	
60ℓ (공동주택용)	노란색			
120ℓ (공동주택용)	파란색			
20ℓ (업소용)	초록색			
60ℓ (업소용)	빨간색			
120ℓ (업소용)	주황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u></p>

남해군 공고 제2019 - 1115 호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남해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27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민대상조례」 및 「남해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9.

남 해 군 수

1. 시상시기 : 제27회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2019년 군민의 날 기념식)
2. 시상대상
 - 가. 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노력하거나 효행·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된 사람
 - 나. 농업·임업·수산업·유통업 및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다. 문화·체육·관광·환경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3. 시상인원 : 1명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음
4. 수상자의 자격
 - 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남해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상기 시상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5. 결격자

- 가.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후보자의 추천

- 가. 후보자는 소속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
- 나.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함(※ 필요시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 다. 추천 시 제출서류
 - 추 천 서 1부(소정양식)
 - 공적조서 1부
 - 이 력 서 1부
 -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부(소정양식)
- 라. 추천기간 : 2019. 8. 19 ~ 2019. 9. 17(30일간)
- 마.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남해군민대상 심사위원회(경상남도 남해군청 행정과)

7. 수상자 결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 가. 수상대상자는 남해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상은 상패를 수여한다.
-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8. 수상자의 특전 : 행정지원의 우선권 부여 등 편의 제공

9. 기타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1116호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제2조)
- 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제4조)
- 다.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제5조)
- 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제6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9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3, 팩스 055-860-3708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전화 055-860-3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해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1121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100리터 쓰레기규격봉투(종량제봉투)를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 무게단위 징수 근거 마련과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100리터 쓰레기규격봉투 삭제(제8조 및 별표 1)
- 나. 읍면사무소 소재지 명칭 변경(제8조)
-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마련 (제8조 및 별표 3)
- 라. 전입자의 타 지역 봉투 사용 근거 마련(제8조)
- 마.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제15조 및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9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62, 팩스 055-860-84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과 폐기물관리팀(전화 055-860-3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를 “13킬로그램이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전입자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세대당 최대 20장)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4의 확인증 인증마크를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제9조제6항 중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 가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 관련)

[단위:원]

규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l	91	9	100
10 l	182	18	200
20 l	364	36	400
50 l	910	90	1,000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이상	6,000	
		10kg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이상	4,000	
		폭1m미만	2,000	
7	전자·전기·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	
16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7	선풍기	모든 규격	2,000	
18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9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20	컴퓨터	본체	2,000	
		프린터	2,000	
		모니터	1,000	
		키보드	1,000	
21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2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3	오디오	폭1m이상	4,000	
		폭1m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4	보일러	모든 규격	3,000	
25	옥매트(건강매트)	모든 규격	3,000	
26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7	침대	2인용(돌침대)	20,000	
		1인용(돌침대)	1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8	식탁	대리석 5인용 이상	8,000	
		대리석 4인용 이하	6,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29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30	문갑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1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2	서랍장	1단당	1,000	
33	장식장, 찬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4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5	파일 캐비닛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36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7	싱크대	가로1m 당	2,000	
		찬장 폭1m 당	3,000	
38	소파	4인용 이상	6,000	
		3인용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39	의자	안마용	5,000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0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1	쌀통	모든규격	2,000	
42	유리종목(거울, 액자)	m ² 당	1,000	
43	병풍	모든 규격	3,000	
44	문짝	0.9m×1.8m당	3,000	
45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6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47	보행기, 붕붕차	모든 규격	1,000	
48	FRP 물통	200 l 당	2,000	
49	PE 물통	200 l 이상	3,000	
		100 l 이상	2,000	
		100 l 미만	1,000	
50	간판	m ² 당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수족관	모든 규격	2,000	
52	변기	모든 규격	3,000	
53	욕조	모든 규격	5,000	
54	실버카	모든 규격	2,000	
55	카펫, 장판	m ² 당	2,000	
56	타이어	소형	3,000	
57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58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59	쿠션, 베개, 가방	모든 규격	1,000	
6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61	화분	모든 규격	1,000	
62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63	책장	모든 규격	3,000	
64	공사장생활폐기물	1톤당	30,000	
65	암물박스(물온박스)	4.5m ³ 1대당	60,000	
66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67	폐소화기	3.4kg 이상	3,000	
		3.4kg 이하	2,000	
68	기타 (잡쓰레기)	40kg 마대당	4,000	
		20kg 마대당	2,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8조 관련)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종이류 (폐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코팅 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다.캔류 고철류	○ 철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라. 유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가능
마. 합성수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1회용 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흘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만 재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바. 영농폐기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라 넣어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폐비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사.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남 해 군 공 보

(24) 제 644호

2019년 8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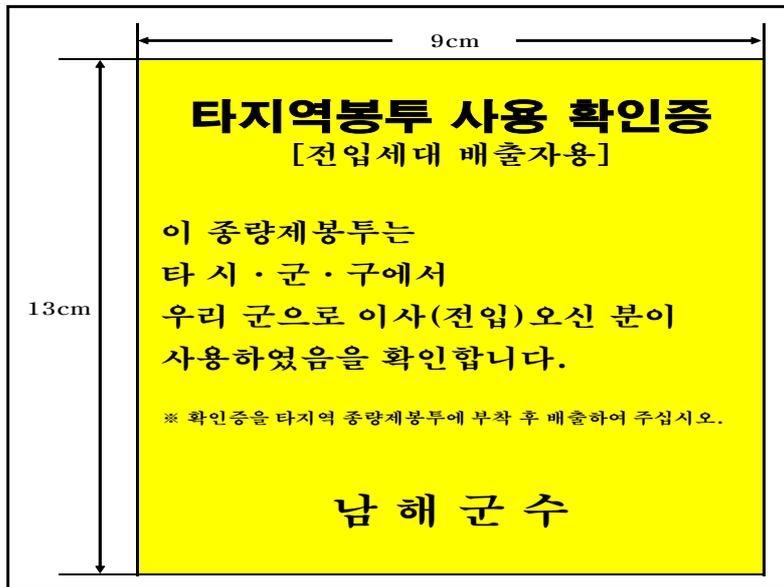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아.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 (FL), 환형 (FCL), 안정기 냉장형(CF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형광등 분리수거용기나 봉투에 넣어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배출
자.전지류	○ 수은전지, 신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차.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	-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카.폐식용유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비 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별표 4]

타지역봉투사용 확인증(제8조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p> <p>5.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활용가능자원</u>”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한다.</p> <p>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삭 제></p> <p>② ----- ----- ----- ----- 13킬로 그램이하----- -----.</p>
<p>③ (생 략)</p> <p>④ 대형폐기물은 배출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p> <p>⑤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읍·면행정 복지센터----- -----.</p> <p>⑤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균</p>

<p><u>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⑥ ~ ⑧ (생 략)</p>	<p><u>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u></p> <p>⑥ <u>전입자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세대당 최 대 20장)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4의 확 인증 인증마크를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u></p> <p>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 을 위한 조치)</p> <p>① ~ ⑤ (생 략)</p> <p>⑥ 군수는 <u>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 품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⑦ (생 략)</p>	<p>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 을 위한 조치)</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재활용가능자원</u>----- ----- ----- -----.</p> <p>⑦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9-1125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현황을 현실화 하고 조례의 내용과 신청서식 용어 일치 및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위치 현실화(별표 1)
- 나.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사항 변경(별지 제2호서식)
- 다.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 용어변경(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9월 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3, 팩스 055-860-3882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지서식

[별표 1]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위치

구 분	위 치	비 고
이 동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68번길 10	
상 주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03	
삼 동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30	
미 조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55	
남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8-10	
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8-12	
서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647	
고 현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75-9	
설 천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674	
설천면복지회관 목욕탕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676-6	
창 선 면 복 지 회 관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 7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 관련)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소			
	직장·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등록번호)	
사용기간	20년	월	일	시부터
	20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구분		참가인원		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액				

위와 같이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면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신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유시별번호의 처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 보존기한을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1126호

제2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남 해 군 수

1. 공고목적 : 제2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승인내용 일반인 열람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
 - 계획범위 : 357.52km² (남해군 행정구역 전역)
 - 주요내용
 - 자연재해 관련 일반현황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등
3.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19. 8. 19. ~ 2019. 9. 19.
5. 열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055-86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1127호

행정예고(재해예방 CCTV 설치사업)

남해군 관내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남해군수

1.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 남해군 관내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9. 08. 19. ~ 2019. 09. 08. (20일)

3.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4.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재난관리용 카메라(대)	설치예정	비고
1	남해읍 아산리 1335-1 일원	3	2019. 09.	
2	남해읍 남변리 645-14 일원	1	2019. 09.	
3	남해읍 남변리 575 일원	2	2019. 09.	
4	이동면 무림리 341 일원	1	2019. 09.	
5	이동면 무림리 1164-144 일원	1	2019. 09.	
6	이동면 석평리 37-2 일원	1	2019. 09.	
7	상주면 상주리 1223-4 일원	3	2019. 09.	
8	상주면 상주리 1248-1 일원	1	2019. 09.	
9	삼동면 동천리 1932-1 일원	1	2019. 09.	
10	서면 서상리 1316-12 일원	2	2019. 09.	
11	서면 대정리 672-18 일원	1	2019. 10.	
12	고현면 대사리 909-4 일원	1	2019. 10.	
13	창선면 상죽리 516-2 일원	2	2019. 10.	
14	창선면 오용리 1281-21 일원	1	2019. 10.	
15	미조면 송정리 1379-1 일원	3	2019. 10.	
16	남면 죽전리 270-7 일원	3	2019. 10.	
17	설천면 노량리 564-2 일원	2	2019. 10.	
18	미조면 미조리 1029-10 일원	2	2019. 10.	

5. 설치대수 : 31대(회전형 17대, 고정형 14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 기간 : 2019. 08. 19. ~ 2019. 09. 08.(20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우 : 52425)
 - 전 화 : 055) 860-3295
 - 팩 스 : 055) 860-3727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현장위치도 1부

의견제출서 1부(서식).

◎ 현장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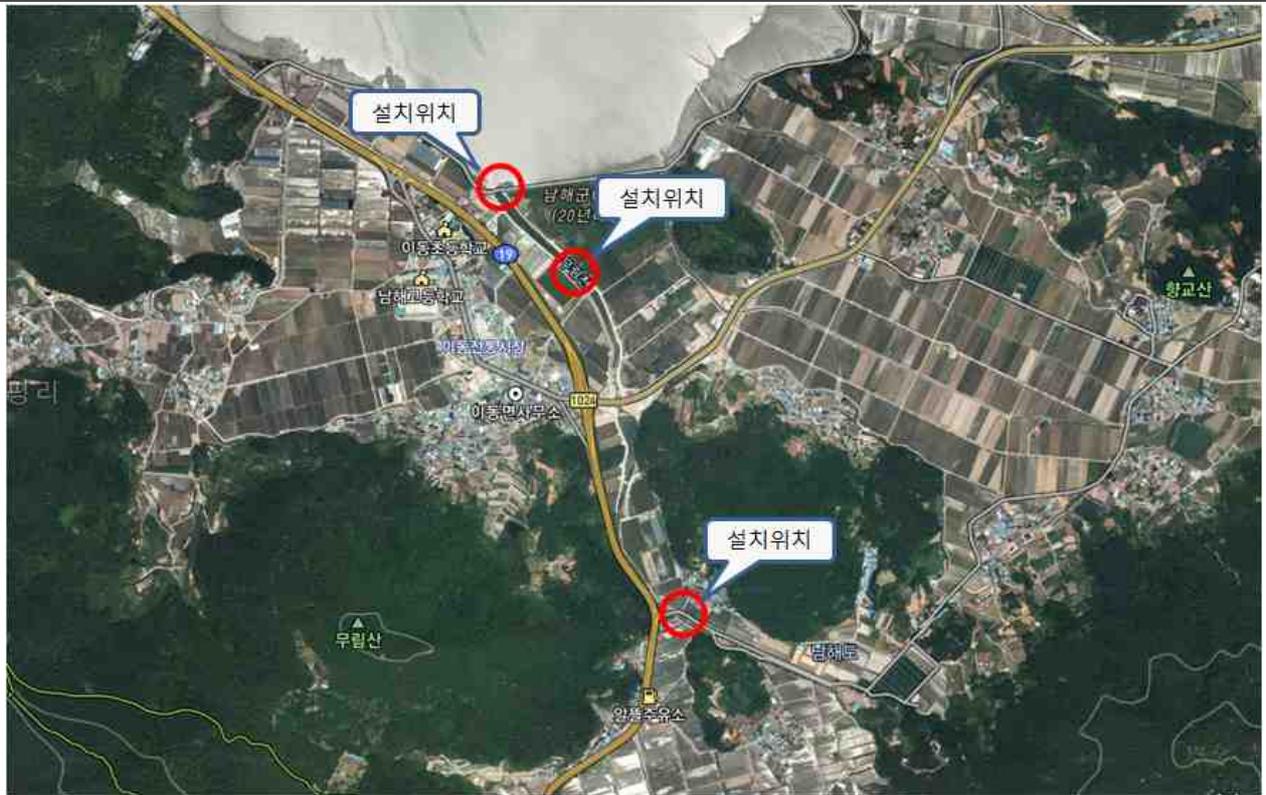


남해읍 아산리 1335-1 일원



남해읍 남변리 645-14, 남해읍 남변리 575 일원

◎ 현장위치도



이동면 무림리 341, 이동면 무림리 1164-144, 이동면 석평리 37-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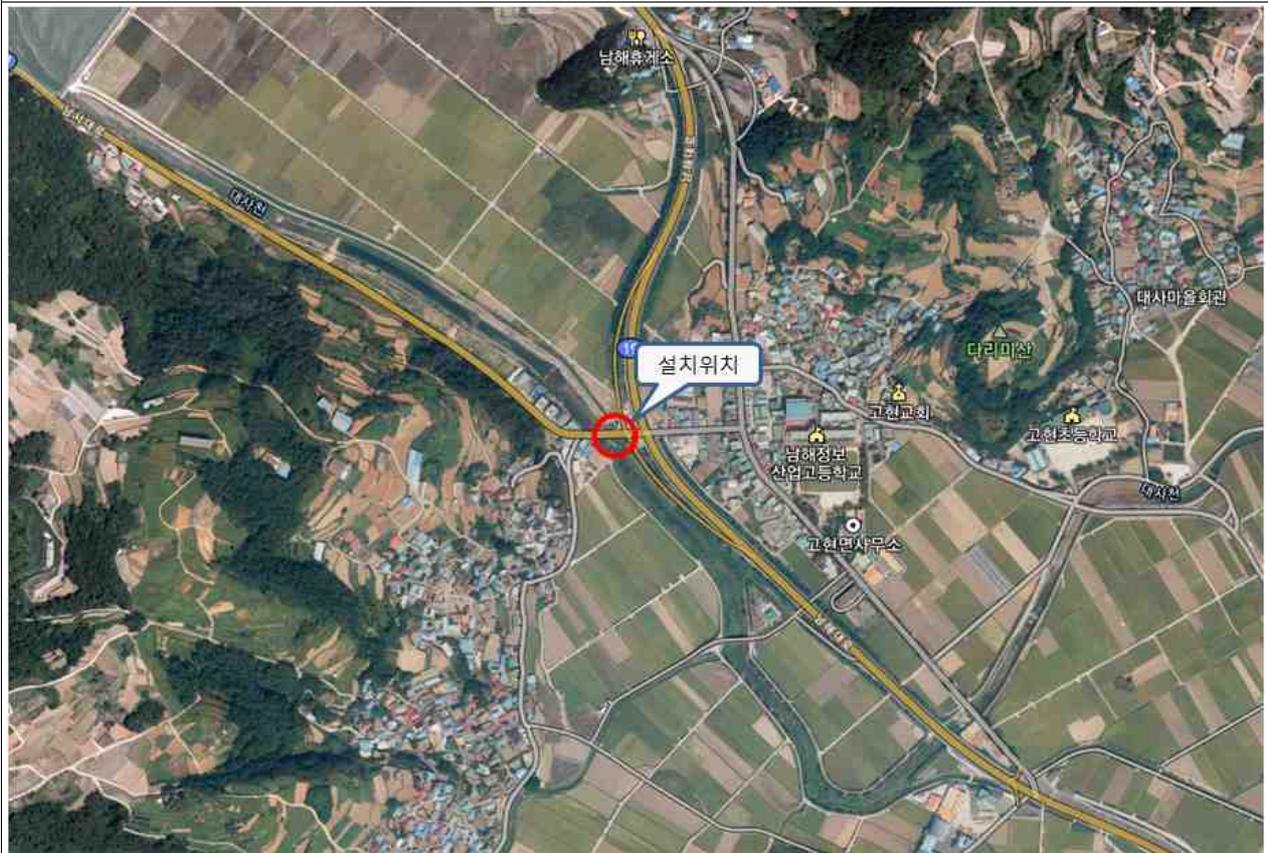


상주면 상주리 1223-4, 상주면 상주리 1248-1 일원

◎ 현장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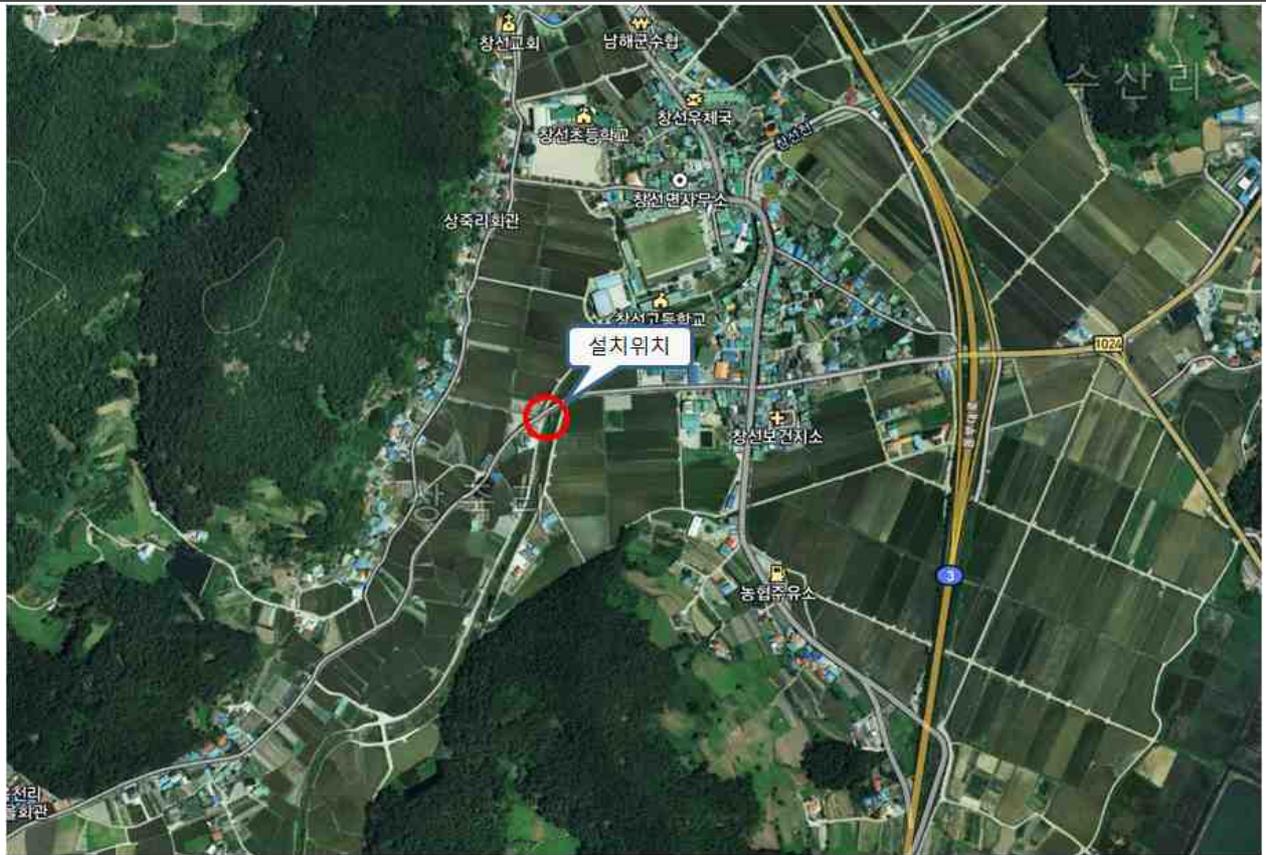


서면 대정리 672-18 일원



고현면 대사리 909-4 일원

◎ 현장위치도



창선면 상죽리 516-2 일원



창선면 오룡리 1281-21 일원

◎ 현장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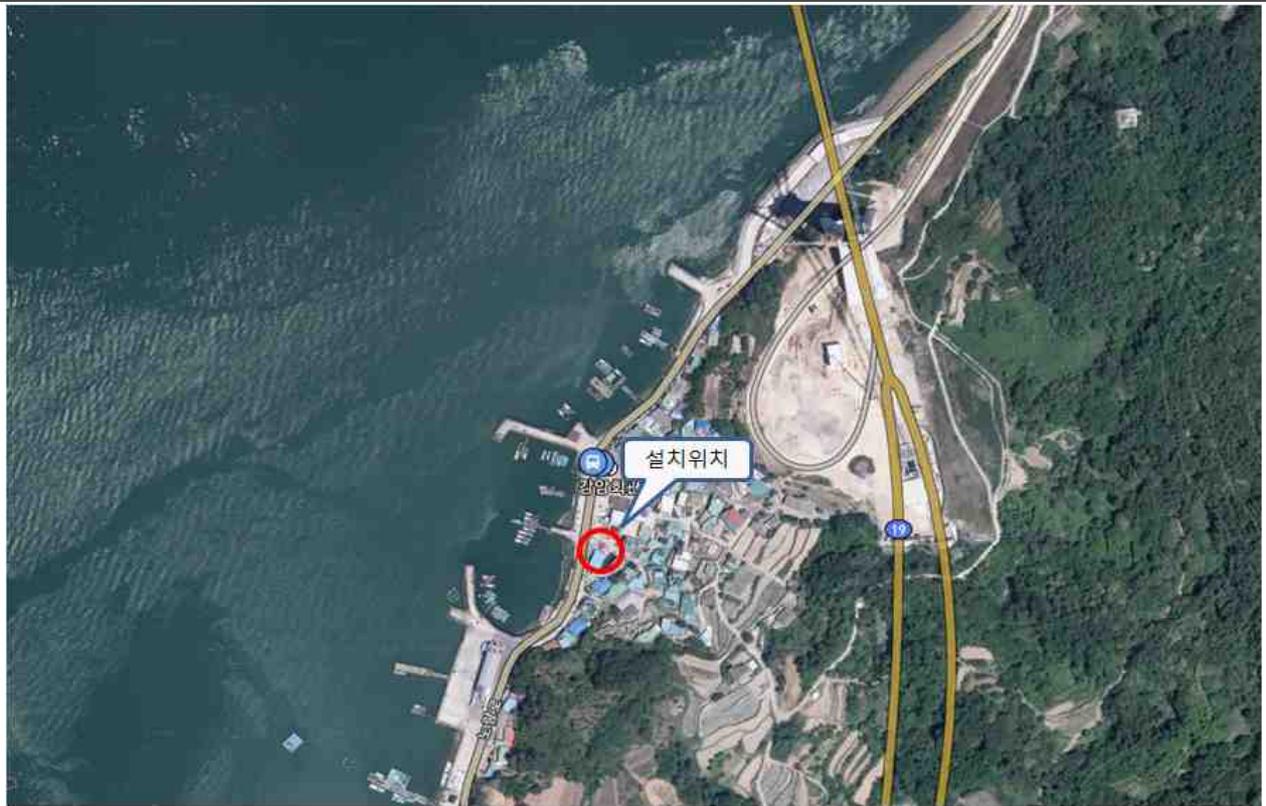


미조면 송정리 1379-1 일원



남면 죽전리 270-7 일원

◎ 현장위치도



설천면 노량리 564-2 일원



미조면 미조리 1029-10 일원

남해군 공고 제2019-1132호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시행 2019.5.14.)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 완화로 공직자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안 제5조)

나.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안 제2조, 제10조)

○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징계’ 에서 ‘징계·경고·훈계’ 까지 확대

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완화(안 제9조)

○ 적극행정 신청기한을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까지 확대

라. 현장면책 결정(안 제10조의2 신설)

○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현장에서 면책 결정

마. 기타 미비사항 보완(안 제3조 등)

○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 변경(피 감사→감사대상, 피감사기관→감사대상기관)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9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전화 055-860-3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이익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및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삽입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8조 중 “종료 시에 피감사기관”을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감사자” 를 각각 “감사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감사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를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을 삭제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면책 결정)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면책“이란,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p> <p>4. “불이익 처분 등“이란, 「행정감사규정」 및 「행정감사규칙」 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 ----- ----- ----- -----.</p> <p>4. “불이익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및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p>
<p>5.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찰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p>

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 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8조(면책제도 안내) -----
----- 종료시에 감사대상 기관-----
-----.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 감사대상자 -----

-----.

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남해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의2 서식]

현장 적극행정면책 검토 신청서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 책임자 의견		

※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감 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총 합 의 건	

남해군 공고 제2019 -1152호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 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족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죽방렴홍보관 어촌작업관 죽방렴관람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족어촌관광단지 위치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54-12번지 일원으로 함(안 제2조)
-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전시하는 시설이며, 어촌작업관은 어업관련 체험이나 작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죽방렴 관람대는 죽방렴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시설(안 제3조)
- 지족어촌관광단지는 남해군수가 관리, 운영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서는 위탁하여 관리.운영(안 제4조)
- 수탁자는 위탁받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짐(안 제5조)

- 수탁자가 시설운영 능력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는 위탁을 취소(안 제8조)
- 죽방렴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계절 등 기상 상태나 시설물의 보수 및 점검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안 제9조)
- 죽방렴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함(안 제10조)
-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고 무상 기증시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342, 팩스 860-3709, e-mail : jae4365@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860-3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지족어촌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족어촌관광단지의 위치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54-1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조성한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렴 어장막 시설을 말한다.
2. “어촌작업관”이란 어업에 관련된 체험이나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죽방렴 관람대”란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야외무대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지족어촌관광단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죽방렴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죽방렴 홍보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
- 2.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죽방렴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질서문란 및 소란 행위를 하거나,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2.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증받은 전시물을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시설물이나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족어촌관광단지 개장일 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전시물 기증대장

기증번호- 호

기 증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연락처	
기증물품 내 역	명 칭		수 량	
	규 격			
	특 징			
	기증일자			
	참고사항			

기증물품 사진

남해군 공고 제2019 - 1153호

양식어업면허 및 소멸 공고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64) 제 644호

2019년 8월 29일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27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신흥	100,000	2019.08.24 2029.08.23 (10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신흥어촌계	제1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28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지족	30,000	2019.08.24 2029.08.23 (10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창지족어촌계	제20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29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단항	100,000	2019.08.25 2029.08.24 (10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단항어촌계	제2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30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단항	100,000	2019.08.25 2029.08.24 (10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단항어촌계	제23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31호	패류양식 (수하식)	가리비	창선 장포	30,000	2019.08.25 2029.08.24 (10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어촌계	제24호 재개발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19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신흥	100,000	2009.08.24 2019.08.23 (10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신흥어촌계	
남해양식 제120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지족	30,000	2009.08.24 2019.08.23 (10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창지족어촌계	
남해양식 제122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단항	100,000	2009.08.25 2019.08.24 (10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단항어촌계	
남해양식 제123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단항	100,000	2009.08.25 2019.08.24 (10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단항어촌계	
남해양식 제124호	패류양식 (수하식)	가리비	창선 장포	30,000	2009.08.25 2019.08.24 (10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어촌계	

남해군 공고 제2019 - 1159 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급식지원 목적, 군수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제4조~제11조)
- 다. 공공급식 지원대상 (제12조~제16조)
-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 무상급식의 지원, 지원신청, 방법 (제17조~제24조)
-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5조~제26조)
- 바.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폐지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9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11, 팩스 055-860-3981
이메일 apple72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축산과 유통지원팀(전화 055-860-3911) 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병원급식,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의 급식, 군대·전의경 급식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바. 우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7.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9. “우리지역”이란 남해군 지역을 말한다.
10. “이외지역”이란 우리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1.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우리지역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우리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1명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 (초등학교 1명, 중·고등학교 1명)
4. 학교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급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제12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 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3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되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우리지역 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 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급식

제1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리지역에 소재하며 우수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

제18조(지원대상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지역농산물 순서에 의해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기획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19조(무상급식의 지원) ①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1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농·축·수산물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보육시설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로컬푸드를 포함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농·축·수산물을 현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한다.

③ 군수는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을 할 때에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지역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인근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국내산 농·축·수산물 순으로 한다. 가공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로 적용한다.

④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 기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등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5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 ④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 ④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1160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2호]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소로3-52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29.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398-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시설 : 도로)

○ 명 칭 : 소로3-52호선(천하수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소로	3	52	5	5	768	5	76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남 해 군 공 보

(80) 제 644호

2019년 8월 29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5,988					
1	미조	송정	1557-1	천	68	68	국	국토교통부			
2	"	"	1398-21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3	"	"	1398-20	전	1	1	국	남해군			
4	"	"	1398-19	전	12	12	국	남해군			
5	"	"	1476	도	1,148	689	국	국토교통부			
6	"	"	1398-18	전	25	25	국	남해군			
7	"	"	1401-6	전	54	54	국	남해군			
8	"	"	1401-5	대	50	50	국	남해군			
9	"	"	1401-4	대	10	10	국	남해군			
10	"	"	1402-3	도	23	23	국	남해군			
11	"	"	산217-2	임	109	109	국	남해군			
12	"	"	1402-2	도	30	30	국	남해군			
13	"	"	1402-4	전	38	38	국	남해군			
14	"	"	산216-2	임	110	110		정0선/남해군			
15	"	"	2173-2	천	139	136	국	국토교통부			
16	"	"	산216-1	임	103	103	정0학 외3인	정0선/남해군			
17	"	"	산215-5	임	91	91	국	남해군			
18	"	"	산215-3	임	295	295	이0근	진해시 석동 656 벚꽃그린빌주공3단지			
19	"	"	1406-2	답	274	274	국	남해군			
20	"	"	산211-1	도	1,940	833	국	국토교통부			
21	"	"	산211	임	2,958	1,269	이0세	산211			
22	"	"	산211-9	임	3	3	국	남해군			
23	"	"	산211-8	임	81	68	국	남해군			
24	"	"	산215	임	7,450	20	이0근	진해시석동656벚꽃그린빌주 공3단지			
25	"	"	산211-7	임	105	94	국	남해군			

남 해 군 공 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	”	”	1415-14	답	9	9	국	남해군			
27	”	”	산198-8	임	716	670	장0래	부산북구덕천동도개공아파트			
28	”	”	1415-13	답	20	20	홍0표	1381-1			
29	”	”	산198-9	임	5	5	국	남해군			
30	”	”	1415-15	장	99	99	국	남해군			
31	”	”	1415-16	도	44	44	국	남해군			
32	”	”	산210-3	임	118	118	국	남해군			
33	”	”	산204-10	임	170	165	국	국토교통부			
34	”	”	1419-2	답	21	21	국	남해군			
35	”	”	산204-8	임	354	354	국	남해군			
36	”	”	산200-6	임	331	64	국	산림청			

남해군 공고 제2019-1163호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가. 폐교 리모델링으로 관광·체험·휴양이 가능한 도농융합 체험·관광형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으로 지역작가와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복합공간 조성
- 나. 지역특화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및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시설 등 정의(안 제1조~제4조)
- 나.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사업 등(안 제5조)
- 다. 군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수탁자 의무, 보험의 가입, 양도 등의 금지 등(안 제7조~제10조)
- 마.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안 제11조)
-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위탁의 취소(안 제12조)
- 사. 시설물의 운영시간, 휴장일 규정(안 제13조)
- 아. 캠핑장 이용료 등(안 제14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9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3750, 이메일 hjlee2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전화 055-860-8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이란 창선면 연곡리에 위치한 주민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캠핑장”이란 주차장, 캠핑장, 데크, 야외화장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캠핑장 등의 시설물 이용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이하 “동창선창작소”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창선면 연곡로 13(구, 동창선초등학교)에 둔다.

제4조(시설) 동창선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수장고
3. 작가창작실
4. 커뮤니티센터
5. 로컬푸드매장
6. 다목적강당(식당)
7. 다목적체험실
8. 북카페
9. 캠핑장
10. 물놀이장
11. 야외화장실, 샤워장
12. 그 밖에 동창선창작소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5조(사업) 동창선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작품 기획전시
2.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체험공방 운영
3.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여가선용을 위한 캠핑장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6조(관리·운영) ① 동창선창작소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③ 동창선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군수에게 동창선창작소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8조(보험의 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동창선창작소 운영에 따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동창선창작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동창선창작소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운영 및 휴장) ① 동창선창작소의 시설(작가창작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료) ① 동창선창작소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설립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예술창작소·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등록번호 :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14조제2항 관련)

(단위:원)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 고
		평일 (일~목요일)	주말 (금, 토요일, 공휴일 앞날)		
캠핑장	1개소/1일 (1박기준)	20,000	25,000	25,000	전기시설 포함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4: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3,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6,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쓰레기 봉투 지급 : 일반용 봉투(20리터) 1매.